

2022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

검 토 보 고 서

I. 제 안 경 위

-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II. 제 안 사 유

-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.

III. 추가경정예산(안)

1) 총 괄

가. 세 입 예 산

(단위:백만원)

구	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증감율(%)
총	계	924,856	924,698	158	0.02
일	반 회 계	8,080	8,080	-	-
특 별 회 계	소 계	51,210	51,210	-	-
	도시개발특별회계	15,000	15,000	-	-
	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	36,210	36,210	-	-
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	865,566	865,408	158	0.02	

나. 세 출 예 산

(단위:백만원)

구	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감	증감율(%)
총	계	1,028,242	1,025,054	3,188	0.31
일	반 회 계	73,231	70,201	3,030	4.32
특 별 회 계	소 계	89,445	89,445	-	-
	도시개발특별회계	53,235	53,235	-	-
	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	36,210	36,210	-	-
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	865,566	865,408	158	0.02	

2) 회계별 사업내역

【세 입】

가.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과 목 명	추 경	기 정	증 감	사 유
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	총 계	865,566	865,408	158	
	일반회계지원금	5,730	5,572	158	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보전(일반회계 전입금)

【세 출】

사 업 내 역

가. 일반회계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사 업 명	추 경	기 정	증 감	사 유
총 계		73,231	70,201	3,030	
신규	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	700	-	700	○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활성화(민생회복)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* 기본 및 실시설계, 공사비 일부 반영
신규	홍제천 역사·문화 명소 조성	800	-	800	
신규	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	600	-	600	
계속	양평1유수지 CSCs 저류조 운영	651	551	100	○ 유입수문 누수문제 해결 위한 수문 이중화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반영
신규	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	30	-	30	○ 코로나 극복 이후 시민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 돌담길 공간 개선 통한 문화거리 활성화 기여
계속	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	2,000	1,200	800	○ '22년 자치구 준설대상 조사결과 대비 예산 부족분 추경 확보 필요

나.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사 업 명	추 경	기 정	증 감	사 유
	총 계	865,566	865,408	158	
계속	예비비	1,158	1,000	158	○ 세입 증가(일반회계 전입금)에 따른 세출 예산(예비비) 편성

IV. 검토의견

1. 개요

1) 일반회계

가) 세입 : 기정예산과 동일한 80억 8천만원

나) 세출 : 기정예산 대비 4.3% 증가한 732억 31백만원

2) 도시개발특별회계

가) 세입 : 기정예산과 동일한 150억원

나) 세출 : 기정예산과 동일한 532억 35백만원

3)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

가) 세입 : 기정예산과 동일한 362억 1천만원

나) 세출 : 기정예산과 동일한 362억 1천만원

4)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

가) 세입 : 기정예산 대비 0.02% 증가한 8,655억 66백만원

나) 세출 : 기정예산 대비 0.02% 증가한 8,655억 66백만원

- 금회 물순환안전국의 추가경정예산안(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)을 살펴보면,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.02% 증가한 9,248억 56백만원이고,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.31%(31억 88백만원) 증가한 1조 282억 42백만원임.
- 회계별로 살펴보면,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변동 없이 80억 8천만원이며,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.3%(30억 30백만원) 증가한 732억 31백만원임.

-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,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기정예산 대비 0.02%(1억 58백만원) 증가한 8,655억 66백만원임.

- 이외 도시개발특별회계,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·세출 예산 모두 변동 없이,
 -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150억원, 세출예산 532억 35백만원,
 -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 동일한 362억 1천만원임.

2. 물순환안전국 소관 분야별 검토 의견

가. 세입 예산안

(1)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

-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.02%(1억 58백만원) 증가한 8,655억 66백원으로 ‘일반회계지원금’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음.

[표 1]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편성안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과 목 명	추 경	기 정	증 감	사 유
1	일반회계지원금	5,730	5,572	158	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분 보전(일반회계 전입금)
	합 계	865,566	865,408	158	

- 이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일반회계지원금 목으로 편성한 것이며,
 -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34조제1항제11호¹⁾에 따라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10m³ 이내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 감소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에 해당함.

1)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34조(감면)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.
 1. - 10. 생략
 1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: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 12. - 14. 생략
 ② - ⑤ 생략

-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」 제 1조²⁾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³⁾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4조⁴⁾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⁵⁾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지원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.
- 다만, 상기 감면 조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지난 2021년 7월 이루어졌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([서울특별시조례 제8106호, 2021. 7. 20., 일부개정])될 것을 2022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금회 추정보다는 지난 본예산안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늦어진 측면이 있으며,

2)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4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4조(독립채산)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.

1. ~ 2 (생략)

② (생략)

5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(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)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

가.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

나. ~ 다. (생략)

2. (생략)

- 이로 인해, 금회 편성된 1억 58백만원은 2022년 1월 기준 대상 가구수 4,401가구의 향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감면액만을 추계한 것으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간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.
- 이처럼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능장행정 및 관련 부서간 협의 부족 등의 사유로 감면 혜택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정되어야 할 것임.

나. 세출 예산안

(1) 일반회계

-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.3%(30억 3천만원) 증가한 732억 31백만원으로, ‘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’, ‘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’, ‘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’ 등 총 6개 사업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음.

[표 2]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기정예산 (A)	집행액 (집행률)	추경액 (B)	추경 예산안 (A+B)	추경 사유
1	물순환 정책과	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	551	13 (2.4%)	100	651	○ 유입수문 누수문제 해결 위한 수문 이중화 실시 설계에 따른 공사비(4억원) 증가분 반영 * 기정예산 공사비 3억원 편성
2	물순환 정책과	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	-	신규	30	30	○ 코로나 극복 이후 시민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 돌담길 공간 개선 통한 문화거리 활성화에 기여
3	물순환 정책과	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	-	신규	700	700	○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활성화 (민생회복)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필요 * 기본 및 실시설계, 공사비 일부 반영
4	물순환 정책과	홍제천 역사·문화 명소 조성	-	신규	800	800	
5	물순환 정책과	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	-	신규	600	600	
6	하천 관리과	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	1,200	0 (0%)	800	2,000	○ '22년 자치구 준설대상 조사결과 대비 예산 부족분 추경 확보 필요

(1)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(사업설명서 P.747)

- 본 사업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에 따른 준설,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, 금회 기정예산 5억 51백만원 대비 1억원 증가한 6억 51백만원 편성하였음.

[표 3] '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' 추경 편성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 (A)	기정예산 (B)	증감 (A-B)
계	(x-) 651,200	(x-) 551,200	(x-) 100,000
공공운영비	(x-) 53,200	(x-) 53,200	(x-) 0
시설비	(x-) 598,000	(x-) 498,000	(x-) 100,000

- 이는 저류조 시설 준공(2019.11월)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행한 유입수문 누수를 해결하고자 편성하였던 수문 2중화 공사비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임.

[표 4] 공사비 주요 증감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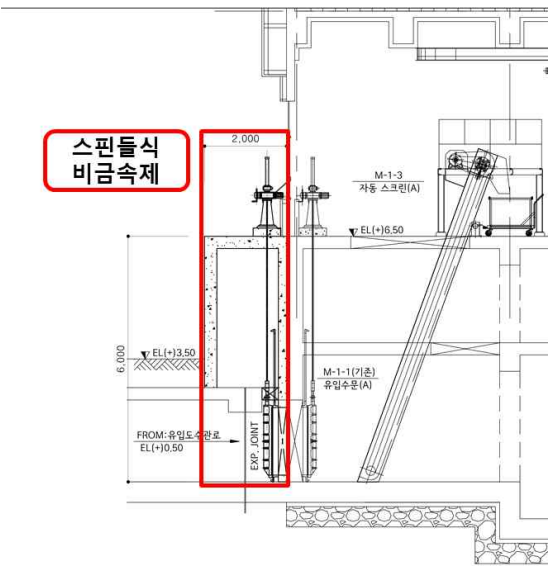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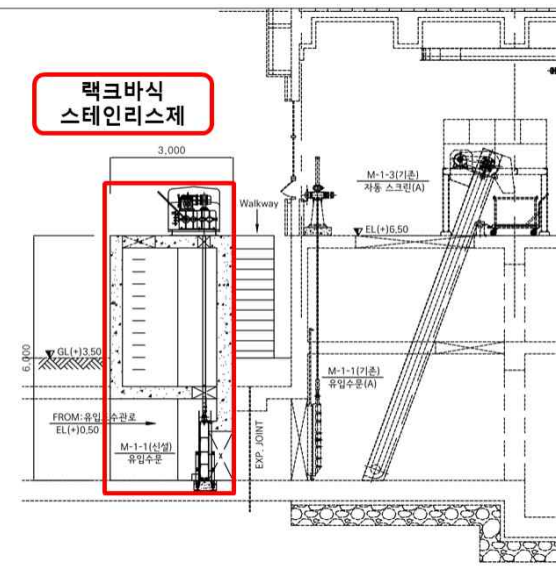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원)

구 분	당초 (A)	변경 (B)	증감사유
계	300,000	400,000	
토목	39,200	72,000	내부 구조 보강 등
기계설비	84,700	161,000	랙크바식 스테인리스제 수문 변경, Walk-Way 설치
전기 및 계측설비	75,100	90,000	기존 LCS 반에 여유 없어 신설 LCS 설치
세척설비 펌프설치	46,000	47,000	지배수펌프 토출배관 개선 및 전동밸브 추가
장비반입구 설치, 기타비용	55,000	30,000	기타 비용 감액

- 공사비가 증가한 사유는 양평1유수지 CSOs저류조를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수문형식을 당초 스펀들식 비금속제에서 랙크바식 스테인리스제로 변경([표 5] 참조)하고, 내부 구조 보강 및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통로(Walk-Way) 설치가 추가됨에 따른 것임.

[표 5] 수문형식 변경(안)

(단위: 천원)

예산편성시 계획(당초)	실시설계 계획(변경 안)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가되는 수문을 스펀들식 비금속(HDPE)제 수문으로 계획 ○ 수문실 토목 구조물을 설비동 벽면에 붙여서 위치하도록 계획 ○ 신설 구조물 상부(개폐장치 설치부)공간을 2000mm로 계획하여 공사비 산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가되는 수문을 랙크바식 스테인리스제 수문으로 계획 → 운영의 편의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스테인리스제 수문으로 계획 변경(운영자 협의) ○ 실시설계 진행 중 검토결과 도수로와 저류조의 EXP. JOINT 설치 위치로 인해 수문실 토목 구조물을 설비동 벽면에 붙여서 설치 불가 ○ 신설 구조물 상부(개폐장치 설치부)공간을 3000mm로 계획하여 유지관리 공간 확보 및 수문 개폐장치(상부)에 접근(유지관리)이 가능하도록 Walk-Way 설치

- 현재 유입수문 누수로 저류조 내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 체류에 의한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

시민의 불편과 시설물 유지관리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강공사의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(2) 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 (사업설명서 P.751)

-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광화문역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덕수궁 주변으로 물길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.

[표 6] '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' 추경 편성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 (A)	기정예산 (B)	증감 (A-B)
계	(x-) 30,000	(x-) 0	(x-) 30,000
사무관리비	(x-) 8,000	(x-) 0	(x-) 8,000
시설비	(x-) 22,000	(x-) 0	(x-) 22,000

- 이는 광화문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(600톤/일)를 활용하여 1910년 전·후 복개되어 서울광장 지하배수로 및 유구로 존재하는 정릉동천⁶⁾을 복원(물순환정책과-18493, 2021.10.21.)함

- 6) ○ 정릉동천은 덕수궁의 금천(禁川)으로써 옛 러시아공사관에서 발원하여 덕수궁 돌담길 → 서울광장 → 청계천으로 흐름
 ※ 금천 : 궁궐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던 물길로, 물을 건널으로써 몸을 단정히 한다는 의미가 있음
- 정릉동천 일부 구간은 암거화 되어(1910년 전후) 지하배수로로 변모하였으며, '12년 9월 서울광장에서 발견되어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됨



<정릉동천 위치도>



<지하배수로-서울광장 지하>



<정릉동천 유구-시민청>

으로써 덕수궁 돌담길 주변 물길 조성 및 공간 재조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

※ '덕수궁 돌담길 옛물길 조성사업' 개요

- [사업계획] ('22) 타당성조사 ('23~) 기본 및 실시설계, 공사
- [사업규모] 길이 590m(정동길 분수대~서울시의회, 물길은 폭 0.5m 이하, 깊이 0.1m)

- 2022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역사, 문화, 도시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미편성되었는바, 금회 공사비를 제외하고 현장 여건 및 법률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 기관·학계·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우선 편성한 것임.
-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정릉동천을 복구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 조사의 의미는 충분하다 사료되나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⁷⁾에 따른 “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”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로, 지난 본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및 인공실개천 조성 시 겨울철 미관 문제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7) 「문화보호법」 제35조(허가사항) ① 국가지정문화재(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아야 한다.

1. - 4. 생략

② - ⑤ 생략

(3)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 외 2개 사업 (사업설명서 P.756, 761, 766)

- ‘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’, ‘홍제천 역사·문화 명소 조성’, ‘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’ 사업은 “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 추진계획(시장 보고, 2021.10.15.)” 및 “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市 선도사업 추진계획(물순환정책과 -18509, 2021.10.22.)”의 일환으로,

[표 7] ‘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’ 외 2개 사업의 총사업비 및 추경 편성 내역
(단위: 백만원)

선도사업(3건)	총사업비	2022년 추경안	23년 이후	비 고
계	9,000	2,100	6,900	
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	3,000	700 설계비 283 공사비 417	2,300	추경 요청액 설계비(100%) 공사비(15%)
홍제천 역사·문화명소 조성	3,500	800 설계비 330 공사비 470	2,700	
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	2,500	600 설계비 252 공사비 348	1,900	

- 서울을 수변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市 선도사업임.

[표 8] 수변 중심 도시공간혁신 市 선도사업 개요

	하천	자치구	사업유형
	정릉천	동대문구	복개구조물의 복합문화공간화
	도림천	관악구	지역경제 활성화
	홍제천(상류)	종로구	역사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화
	홍제천(중류)	서대문구	수변테라스 카페

- 동 사업들은 지난 2022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시행 절차의 첫 단계인 기본구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미편성된 바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기본구상([붙임 1] 참조)을 완료(물순환정책과 -4364, 2022.3.15.)하고, 이들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65백만원과 공사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 12억 35백만 원을 합한 총 2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들 3건의 지천르네상스 선도사업의 경우 순수한 하천정비 사업이 아닌 하천과 주변생활권 및 보행축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.
- 따라서 물순환안전국이 이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- 또한, “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”의 세부사업 중 문화플랫폼(디자인 컨테이너 4개동) 조성과 빛아트 테마공간 조성, “홍제천 역사·문화 명소 조성”의 세부사업 중 수변문화플랫폼(컨테이너형 4개소) 조성 그리고, “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” 세부사업 중 수변테라스 및 수변 문화플랫폼(2개동) 조성의 경우는,

- 수변 인공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천과 조화성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 자연스럽고 깨끗한 수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(4)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(사업설명서 P.771)

- 본 사업은 하천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의 수질개선 및 민원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, 금회 기정예산 12억원 대비 8억원 증가한 20억원을 편성하였음.

[표 9] ‘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’ 추경 편성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 (A)	기정예산 (B)	증감 (A-B)
계	(x-) 2,000,000	(x-) 1,200,000	(x-) 800,000
시설비	(x-) 2,000,000	(x-) 1,200,000	(x-) 800,000

- 서울시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, 당초 2022년 본예산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및 민생피해 복구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후순위로 밀려 8억원이 감액된 사업임.
- 이에 서울시는 금회 추경을 통해 감액된 8억원을 다시 증액하려는 것으로,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매년 20억원([표 10] 참조)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편성이라 사료되며,

[표 10] 최근 3년간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9	(x-) 2,043,000	(x-) 0	(x-) 0	(x-) 2,043,000	(x-) 2,000,734	(x-) 0	(x-) 42,266
2020	(x-) 2,000,000	(x-) 0	(x-) 0	(x-) 2,000,000	(x-) 1,862,187	(x-) 0	(x-) 137,813
2021	(x-) 2,000,000	(x-) 0	(x-) 0	(x-) 2,000,000	(x-) 2,000,000	(x-) 0	(x-) 0
2022	(x-) 1,200,000	(x-) 0	(x-) 0	(x-) 1,200,000	(x-) 0	(x-) 0	(x-) 1,200,000

- 하천 공사의 특성상 우기철(5~10월)과 조류·어류의 산란기(5~6월)를 피하기 위해 조기 공사착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시의적절하다 하겠음.

(2)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

-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8,654억 8백만원 대비 0.02%(1억 58백만원) 증가한 8,655억 66백만원으로,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 증가에 따라 세출 예산 '예비비' 1건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음.

[표 11]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

(단위: 백만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기정예산 (A)	집행액 (집행률)	추경액 (B)	추경 예산안 (A+B)	추경 사유
1	물재생 계획과	예비비	1,000	0 (0%)	158	1,158	○ 세입 증가(일반회계 전입금)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 편성

- 이는 한부모가족 중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으로 발생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 감소분 1억 58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함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,
 - 예비비가 기정예산 10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[붙임] 1.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선도사업 기본구상

[붙임 1]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선도사업 기본구상

□ 정릉천 문화복합공간 조성

- 사업위치 : 정릉천 (동대문구 제기동 271-50)
- 사업기간 : '22. 1. ~ '23. 6.
- 총사업비 : 30억원 (설계비 283백만원, 공사비 2,717백만원)

<p>기획방향</p>	<p>경관을 저해하는 복개구조물을 즐거운 이벤트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</p>
<p>대상지 현황</p>	   
<p>공간계획</p>	 <p>액티비티 등 이벤트 영역 (디자인정책과 협업)</p>  <p>계단형 연결로 설치, 커뮤니티 공간 조성</p>  <p>재미있는 시설이 설치된 쉼, 여가 공원</p>  <p>다양한 기능을 가진 재미있는 공공시설물 설치</p> 
<p>주요 콘텐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[상부공간] 시민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감성문화공간으로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활 스포츠 액티비티 공간(스케이트보드, 농구장, 놀이공간 등) - 시민 힐링 커뮤니티 공간(수변카페, 이벤트, 힐링프로그램 등) ○ [하부공간] 물결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디지털 감성존 <p>※ 디자인정책과와 협업하여 공간 및 문화콘텐츠 기획</p>

□ **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**

- 사업위치 : 도림천(관악구 신림동 1587-2 ~ 1638-1 일대) ※행정동: 신원동
- 사업기간 : '22. 1. ~ '23. 6.
- 총사업비 : 25억원(설계비 252백만원, 공사비 2,248백만원)

<p>기획방향</p>	<p>수변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- 단절된 도시공간·지역자산을 수변을 중심으로 연결</p>
<p>대상지 현황</p>	   
<p>공간계획</p>	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— 도로다이아트 — 수변테라스 조성(데크) — 하천공간  <p>신원시장측 - 도로조정 및 페이빙</p>  <p>스탠드 및 계단, 상하부 연결</p>  <p>순대타운측 - 데크 확장 및 도로조정</p>  <p>추가제안 - 신원보도교 활성화</p>
<p>주요 콘텐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형 수변테라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통시장과 순대타운과 연계, 음료와 식사를 즐기는 공유테라스 - 주말 '차없는거리'로 운영 리버마켓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 ○ 별빛내린천 축제, 문화재단 연계 프로그램(버스킹, 전시·체험행사 등) ○ 체험형 편(FUN)시설물, 수변 및 지역자산 안내시설물



□ **홍제천 역사·문화명소 조성**

- 사업위치 : 홍제천 (종로구 홍지동 ~ 서대문구 홍은동)
 - 홍지문 일원 (종로구 홍지동 산4 일대)
 - 인공폭포 일원(서대문구 홍은동 428-1 일대)
- 사업기간 : '22. 1. ~ '23. 6.
- 총사업비 : 35억원(설계비 330백만원, 공사비 3,170백만원)

[홍제천 홍지문 일원 (종로구 홍지동 산4 일대)]

<p>기획방향</p>	<p>수변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- 자연경관의 회복 및 공유경관 확보</p>
<p>대상지 현황</p>	
<p>공간계획</p>	
<p>주요 콘텐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홍제천·탕춘대성을 연계한 야간경관 명소화 ○ 수변과 역사자원을 연계한 문화·관광 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보해설관광코스 개발 검토, 한양도성 방어시스템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한지문화제, 홍제천 수변문화 지도, 수변버스킹, 그림 등 문화예술품 전시 등 ○ 인왕산-홍제천-북한산 보행축 연결(홍제천 연결길 발굴·안내)

[홍제천 인공폭포 일원 (서대문구 홍은동 428-1 일대)]

<p>기획방향</p>	<p>수변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명소화 - 수변테라스 카페 조성</p>
<p>대상지 현황</p>	
<p>공간계획</p>	 <p>유휴공간 활용 테라스카페 조성</p> <p>공영주차장 개선-잔디포장</p> <p>계단형 스텝드광장-공공문화기능 부여</p>
<p>주요 콘텐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변테라스 카페 - 커피한잔 할 수 있는 일상의 향유공간 마련 ○ 수변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제천 수변문화 지도, 수변버스킹, 그림 등 문화예술품 전시회 등 ○ 안산-홍제천-북한산 보행축 연결(홍제천 연결길 발굴·안내)